

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」

제안 설명

의안번호 제971호 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동의안은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,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 바,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은 2016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“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2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50+세대가 새로운 인생준비 및 행복한 인생2막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, 교육, 일, 여가, 커뮤니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이 2020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